

의안번호	2200732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08.09.
추계번호	24D09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2023년 징계위원회 개최건수는 3만 845건으로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최근 5년간 군인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건)

	2019	2020	2021	2022	2023
성실의무위반	8,005	8,538	5,799	4,688	4,624
복종의무위반	11,793	15,583	10,850	10,870	9,428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1,980	1,081	589	801	991
공정의무위반	415	270	157	134	171
비밀엄수의무위반	5,125	5,663	5,079	4,007	3,375
품위유지의무위반	13,982	14,387	11,775	9,988	9,850
법령준수의무위반	1,082	1,058	1,015	1,097	1,129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16	24	24	20	30
정치적중립의무위반	1	3	1	1	1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	—	—	—	—
청렴의무위반	249	265	186	145	143
기타	237	—	725	1,118	1,103
합계	42,885	46,872	36,200	32,869	30,845

자료: 국방부

-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군인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도록 할 경우,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참석비는 1일 15만 원(기본), 20만 원(2시간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포함해야 하는 사건의 기준 등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민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건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